

유.무선 중계기국 서버 운용 시행세칙

(본 문은 연맹 무선국관리규정 및 유.무선중계기국의 개설 및 운용규정의 시행세칙이다)

제 1 조 (운용 : 서버운용 및 관리주체) 연맹 유.무선중계기국의 컨트롤 메인서버 운용 관리주체는 연맹이다.

제 2 조 (서버의 접속방법 및 관리) ① 연맹 유.무선중계기국의 서버컨트롤은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, 본부 및 지부도 아래와 같이 분리 관리 접속하여야 하며 별도의 관리 방법이 필요할 경우 서버운용관리자는 연맹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.

1. HL0HQ-(User) – 서버 관리자용
 2. HL0HQ-L(Link) – 광역중계기용
 3. HL0HQ-R(Repeater) – 유.무선중계기국용
- ② 각 본부 및 지부의 유.무선중계기국 운용 관리는 모두 연맹의 “HL0HQ – R (Repeater) – 유.무선중계기국용”에 접속하여 서버관리가 되도록 한다.
- ③ 제2조의 HL0HQ-L(Link)은 광역망중계기의 컨트롤 및 홍보 용도로 운용한다.
- ④ 개인 유저국은 HL0HQ-R(Repeater)에 접속 할 수 있도록 임시 개방한다.
- ⑤ 유.무선중계기국을 허가받은자(연맹)는 무선국이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지 않을 경우, 그 무선국(중계기국)을 회수하여 타 희망하는 지역에 설치하여 운용되게 할 수 있다.

제 3 조 (서버 관리자 임명 및 직무) ① 유.무선중계기국의 서버 관리자의 임명은 중계기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유.무선중계기국의 개설 및 운영 규정 제1조 2항에 의거 ‘임명된 메인서버관리자’로 정의한다.

② 각 본부 및 지부의 유.무선중계기국 운용 관리는 연맹 기술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, 연맹 메인서버 운용관리자와 협의하여 관리한다.

③ 연맹으로부터 ‘임명된 메인서버관리자’로 임명받은 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연맹의 HL0HQ (User), L(Link), R(Repeater)외에 각 본부 및 지부로 허가된 중계기국의 서버(PC)에 수시로 접속하여 서버상태를 점검하며 관리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
④ 임명권자는 임명된 관리자(위원)가 직무 수행이 적절치 못할 경우 해임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 4 조 (본부 및 지부의 중계기 주파수 설정) ① 각 본부, 지부 컨트롤서버는 연맹 무선국관리규정과 유.무선중

계기국의 개설 및 운용 규정의 기술기준에 따라 중계용 무선국을 설치한다.

- ② 유.무선중계기국의 주파수는 연맹에서 각 지역별로 배정된 주파수(UHF)를 의무적으로 사용한다.(별표)
- ③ 서버의 컨트롤 프로그램 창(Location/Description)에 자국의 지역명과 주파수(MHz)를 의무적으로 표기(예: 흥천 433.820) 하며, 톤(Tone)은 88.5Hz를 기본으로 하되 무선국 관리규정 제6장 제31조 7항, 8항에 의거하여 사용한다.
- ④ 컨트롤 서버에서 중계기의 TOT(Time of Time)는 3분 (180초)이내로 설정 하고, 다중 접속 방지를 위하여 (Conferencing)을 비활성화로 설정하고, “Security”에서 “Dynamic conf detect”도 작동하도록 설정한다.

제 5 조 (각 서버의 보조기능 활용 기준) ① 각 본부, 지부 컨트롤 서버에서 교신중에 자국에 호출부호를 송출할 수 있도록 한다.

- ② 연맹은 메인서버를 이용하여 연맹의 홍보 및 공지사항 등을 1일 수 회 송출할 수 있으며 각 본부 및 지부도 지역 내로 홍보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사전에 연맹 중계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송출한다.
- ③ 연맹의 메인서버와 본부 및 지부의 서버 설정은 중계기국의 기능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술적인 부분은 중계기위원장의 직권으로 예고 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.
- ④ 본 시행세칙은 연맹 무선국관리규정과 유.무선중계기국의 개설 및 운용 규정에 따른다.
- ⑤ 별도의 세칙이 필요할 경우 중계기위원회의에서 개정 후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. (2019년 2월 9일 이사회의 의결 시행)

제 2 조 (준 칙)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연맹 무선국관리규정 및 세칙에 따른다.

제 3 조 (개 정)

2024. 3. 9. 제2조 ⑤항 신설, 제4조 별표 추가, ③항 개정